신년 특집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저소득층 암 무료 검진, 자동차 등록 간소화
관광지 바가지 요금 단속 '관광경찰제' 도입

올해부터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 대상이 확대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대 폭 개선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 각 분야에서 달라진 제도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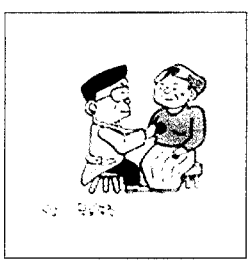

보건 · 복지

▲희귀 · 난치병 의료비 지원=기존 만성신부전증, 근육종,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외에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 검진=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99만명(소득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지난해 1만5천4백74명에서 8만6천9백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이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분유 이름 이유식 광고 금지=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언론매체에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금연 건물=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 · 중 · 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보호

▲자동차 등록 간소화=3월부터 자동차 등록 때 자동차등록신청서만 내면 된다. 시 · 도간 주소지 변경 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첨부하고, 이전 등록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처벌=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이사나 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보 ·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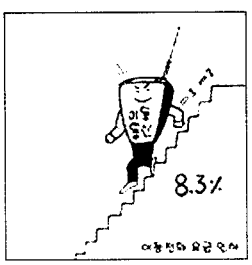

▲이동전화 요금 인하=1월부터 이동 통신 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4월부터 지문 · 음성 · 홍채 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편요금 조정=1월15일부터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1백원으로, 국제통상 우편물은 10.4% 정도 오른다. 빠른우편 요금은 3백40원에서 2백80원으로 내린다.

금융 · 세제

▲고객 과실이 없는 신용카드 사고=현금 자동지급기, 자동입 · 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 제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연체 금리 차등 적용=대출금 연체 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새로운 연체금리는 은행별로 1~3월중 적용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백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를 받고 1천5백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천만원 이하는 15%, 4천5백만원 이하는 10%, 4천5백만원 초과는 5% 공제율이 적용된다.

병무

▲인터넷으로 입영일 선택=입영 연기된 대학생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의무소방원제 도입=소방행정 수요 폭증에 따라 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올해 1천2백92명이 충원되고 연차적으로 모집규모가 3천명선까지 확대된다.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 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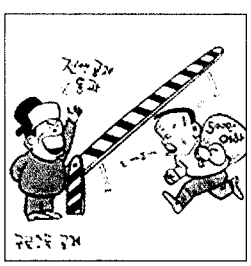

노동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저소득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 준다.

▲근로자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 급여가 1백5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남녀 차별 시정명령제=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

▲쓰레기 종량제 개선=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강화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속이 보이지 않는 봉투가 보급되며 봉투의 끈도 길어진다.

▲3대 강 특별법 시행=금강 · 낙동강 ·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백~1천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 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수 처리 기술 기준=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오수 · 분뇨 처리 강화=건물 신축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산업폐수 관리제도가 개선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공해 관리 강화=하반기에 시·도 조례로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법무

▲외국인 취업 허용=3월부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 인정자 중에서 법무부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증인 감치제=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한다.

▲채무자 재산 조회제=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 재산 명시의무 강화=7월부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부동산 등기 완전 전산화=9월께 전국 2백10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어디서나 다른 관할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송 구조 활성화=1월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 구조'를 대폭 활성화,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가 도입된다.

▲경범죄처벌법 개정=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해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대형버스 운행기록계 설치=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포함되고, 대형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년 특집

관광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원시설업 안전기준 강화=상반기부터 대규모 유원시설들은 안전관리자를 시설 내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관광경찰제 도입=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이 5월 이전에 등장한다.

농림수산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대상품목이 사과 · 배에서 포도 · 단감 · 감귤 ·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정 지원율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백평 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백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백평이 되면 3백평 이하 농지도 살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위락시설 제한=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밭벼 수매 중단=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산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GMO 표시대상 농산물 확대=표시대상 품목이 콩, 옥수수, 콩나물 이외에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 비치 의무제=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활어 원산지표시제 도입=활어의 수입 증가로 소비자와 국내 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표시범위는 수족관(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횟집, 활어운반차량)이다.

▲어업재해 복구지원 확대=철거비 1백% 지원으로 개선되고 대당 14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산업 · 건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LP(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뒤 가스를 공급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토지 보상액 평가=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민간이 부도 등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 · 군 · 구에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행정

▲재산세 과세 기준일 조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기준일이 달라 혼란을 줌에 따라 매년 6월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돼 세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1개월 늦춰 매년 7월1일로 조정된다.

▲지목 신설=잡종지로 돼있는 주차장 · 주유소 · 창고용지 · 양어장의 지목을 신설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행정자치부와 시 · 도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시 · 군 · 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편집부〉